

KS인증에 대한 요건과 안내



한국가스안전공사 KS 인증기관

1. 한국가스안전공사 KS인증기관 지정

- 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6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가스보일러, 가스레인지, 용기, 수소가스충전소 밸브, 독성가스 검지기, 스크러버 등 38개 품목의 KS인증기관으로 지정

2. KS인증 심사준비 사항

- ☐ KS 표준 및 인증대상 지정 여부 확인
 - 해당되는 KS표준번호, 표준명, 해당 제품이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
 - 치수, 재료, 호칭 구조 등에 적합성 및 특성 및 성능 등이 KS수준 이상인지 확인
 - 인증심사 기준 지정 여부 확인
- ☐ 인증심사기준 이해 및 확인
 - 인증심사기준에서 심사사항별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
 - KS Q 8001의 부속서 B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 검토
 - 적용하고 있는 표준이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유효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
- ☐ 인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기법 도입
 - 해당 KS인증심사기준과 공장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KS수준 이상으로 사내 표준화 추진
 - 해당 KS인증심사기준과 공장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개선 기법, 관리도, 통계, 샘플링 검사 기법 등 습득
- ☐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담당자 확보
 - 3년 마다 품질관리담당자는 정기교육, 경영간부의 30% 이상은 경영간부 교육을 이수
 - 인증신청자는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품질관리담당자로 지정
 -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인 품질관리부서(임직원이 20인 이하 기업은 예외)에서 최소 3개월 이상 독립적이고 적절하게 표준화와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보유 필요
- ☐ 제조설비 시험·검사설비 시료 확보
 -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, 보수, 윤활관리 등의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
 - 해당 제품의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시험·검사하기 위한 설비를 인증업체에서 보유(단, 제품이 KS수준 이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로 외부설비 혹은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 가능)

- 해당 인증심사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료채취에 충분한 종류별 시료를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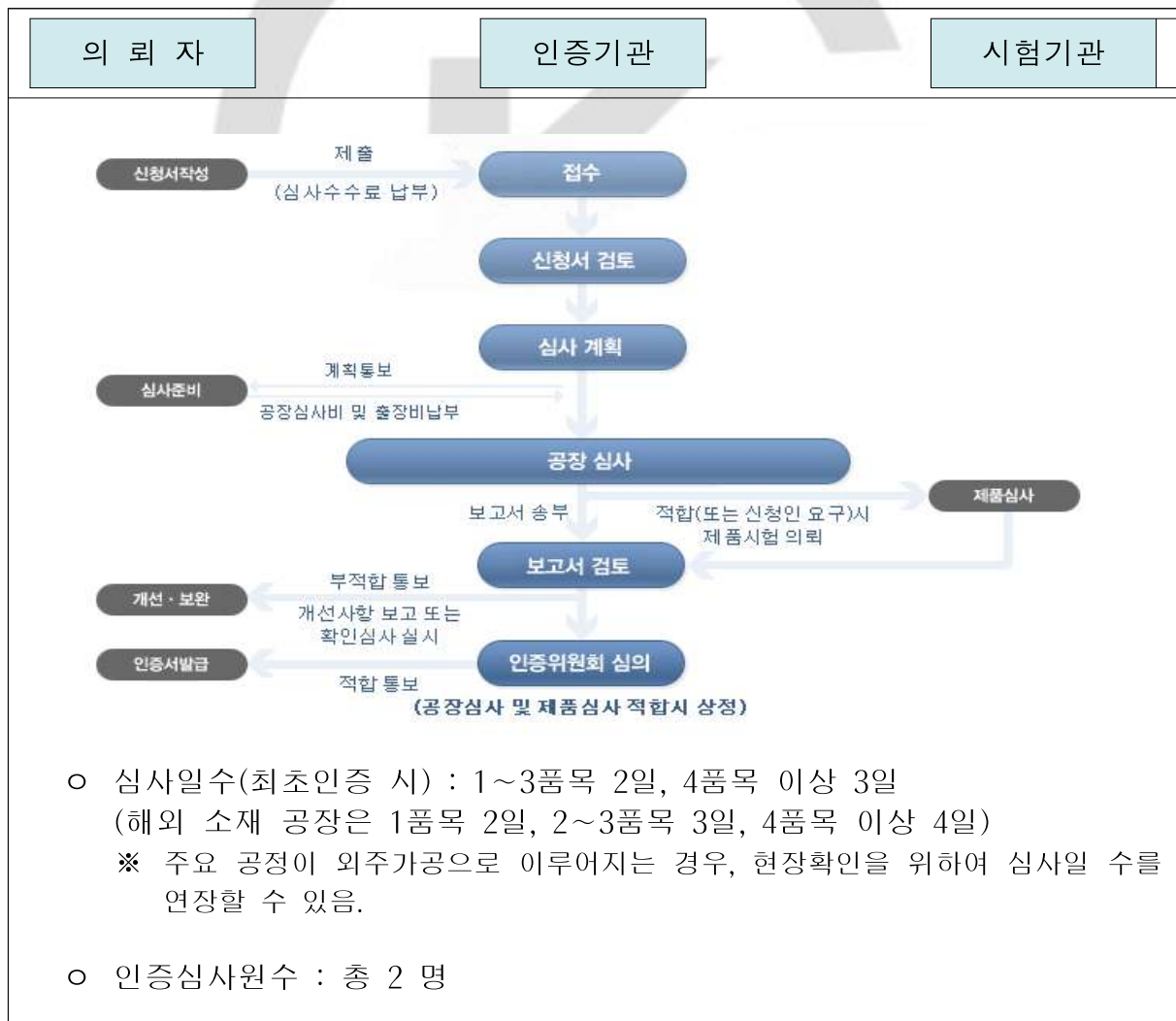
□ 3개월 이상의 관리 실적

- 심사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까지 모든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, 그 관리 실적을 정리하여 심사원에게 제시
- KS 규격 및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는 자체검사(제품검사, 형식검사)를 실시하고 이행기록을 제시

□ KS심사 신청

- 제품인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
 - ※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검사대상인 경우는 관련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후 신청

3. 신규인증 처리절차



4. 심사항목

심사항목	평가항목 수(핵심품질)
1. 품질경영	5(1)
2. 자재관리	6(1)
3. 공정·제조설비 관리	8(1)
4. 제품관리	6(1)
5. 시험·검사설비 관리	3(1)
6. 소비자보호 및 환경·자원 관리	5(1)
계	33(7)

※ 공장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품심사를 진행함.

5. 교육이수

과정	내용	시간	
		양성교육	정기교육
경영간부	① 산업표준화제도와 정책방향 ②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전략 ③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제도의 최근 동향 및 쟁점 ④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기법 사례 ⑤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 추진을 위한 경영간부의 역할 ⑥ 표준화 관계 법규 및 국가표준 시책 ⑦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-	16시간
품질관리 담당자	① 산업표준화법규 ②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개요 ③ 통계적인 품질관리기법 ④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실시 ⑤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 실무 ⑥ 품질관리담당자의 역할 ⑦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100시간	16시간

- ※ 1. 교육주기 3년, 교육기관,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
 2. 해외소재 업체의 경우 품질담당자는 한국표준협회의 독서통신교육(50만원)을 이수 후 시험응시[응시료 \$300, 감독비 \$300(감독관 출장비 별도)] 후 자격확보 가능
 3. 해외의 CQ자격증 등의 품질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품질담당자 교육면제 가능(관련 자격증 가능여부 차후 확인 필요)
 4. 해외소재 업체의 경우 경영간부는 한국표준협회의 독서통신교육(50만원)을 이수 후 Report 제출하면 수료증 접수 가능

6. 품질관리 담당자

- ☐ KS인증심사기준에서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담당자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.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은 전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들을 관리할 주체는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어야 한다. 따라서, KS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은 해당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고 맡은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.
- ☐ 품질관리 담당자의 자격기준(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46조)
 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, 품질경영기사,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 취득자
 - 영 제30조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
 -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
- ☐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을 갖추고 3년을 주기로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공장 및 사업장의 품질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당해 업체에서 12개월(최소 3개월)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, 독립적으로 적정하게 표준화와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.

7. 신청시 제출서류 및 심사시 제출서류

- ☐ 신청시 제출서류
 - 대표자 동의서
 -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(해당하는 경우)
 - ISO 9001 인증서 사본, 내부심사 결과, 경영검토 결과,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주요 문서화된 정보(해당하는 경우)
 - 외국KS공장 조사표(해외업체인 경우만)
 - 시험(검사)설비보유현황 및 제조(가공)설비보유현황(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에는 외주가공 업체 현황, 외부시험·검사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외부 설비업체 현황 포함)
 - 주요 자재관리(부품, 모듈, 재료 등) 목록
 - 가스관련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(해당하는 경우)

- ☐ 심사시 준비서류
 - 회사 현황 설명서(심사원용 각 2부)
 - 회사연혁 · 회사개요 · 사내표준 목록 / QC공정도 ·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
 - QM추진현황 (QM행사, 분임조, 제안, 교육이수현황, 불만처리, 5S, 안전 관리 등)
 - 공장 일반 현황, 제품재고 현황, 생산 및 판매현황, 주요 자재관리 목록(부품, 모듈, 재료 등), 제조설비/시험·검사설비 현황
 - 회사 표준 / 해당 KS표준 및 심사기준(최신개정판 확인)
 - QC 담당자 자격증 원본 및 근무 증빙서류

8. 공장심사 면제사항

- ☐ 인증 받은 자가 이미 인증 받은 품목 내에서 그 종류 · 등급 · 호칭 · 모델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한 경우 (종류추가 심사 시) :품질경영 관리, 자재 관리, 공정 · 제조설비 관리
- ☐ 인증신청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, 제품심사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 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: 품질경영 관리, 자재 관리, 공정 · 제조설비 관리
- 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인증을 받은 자(시험 방법에 대한 인증만을 받은 자를 제외)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(KAB이나 IAF로 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QMS(품질경영시스템)인증을 받은 경우) : 품질경영관리

9. 사후 관리

정기심사	1년주기 공장심사	시판품조사
· 인증받은 후 매 3년	· 매년 실시 · 대상품목은 매년 국가 기술표준원장이 고시	·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,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10. 수수료 및 비용

(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

구 분	금 액
가. 기본수수료	○ 인건비, 사무실 운영비, 감가상각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
나. 인증심사원 출장비	○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. ○ 출장기간은 제품인증의 경우에는 공장심사에 필요한 일수, 서비스인증의 경우에는 사업장심사에 필요한 일수 및 서비스심사에 필요한 일수(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의 과반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)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, 출장 인증심사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.
다. 공장심사비	○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(만원 단위 미만 절사)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 ○ 공장심사비 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, 공장심사비의 산정 인증심사원은 2명으로 한다. 다만,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1을 공장심사비로 추가할 수 있다.
라. 제품시험 수수료	○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·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 수수료
마. 시료 운반·조작비	○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
<비고> 1.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사목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사에 따른 비용은 인증기관이 부담한다. 2.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별표 14 제2호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.	